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”를 “제4항까지”로 한다.

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양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법 제6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”로 한다.

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
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·광고하는 식품등(이하 “기능성표시식품”이라 한다.)

제1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

3.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
기능성표시식품

별표 1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식품 및 축산물”을 “식품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원재료명”을 “원재료명(재질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목 “표시방법(제5조제2항 관련)”을 “표시방법(제5조제2항,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혼용(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)하여”를 “혼용하여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글씨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1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. 다만,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(OEM,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 식품등은 제외한다.

2) 「상표법」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
별표 3제2호나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6호 본문 중 “정보 표시면”을 “정보표시면(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4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9 제2호가목3)에 따른 연구·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의 표 라목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 고	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
---	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7 Ⅱ. 개별기준 제1호의 표 라목4)카)를 타)로 하고, 카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)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 지 않는 표시·광고		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	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	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.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7 Ⅱ. 개별기준 제3호의 표 다목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 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	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
--	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영양표시) ① ~ ③ (생략)	제6조(영양표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양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.</u>
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</u> 규정 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 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<u>⑤ ----- 제4항까지-----</u> ----- ----- -----.
제7조(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) ① (생략)	제7조(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.</u>
<u>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</u>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 의 표시기준, 표시사항 및 표시방 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</u> 규정한 사 항 외에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 품등)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(이하 “ 자율심의기구”라 한다)에 미리 심 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0조(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 품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제15조(회수·폐기처분 등의 기준)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, 압류·폐기 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(생 략)	3.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 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 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·광고하는 식품등(이하 “기능성표시식품” 이라 한다) 제15조(회수·폐기처분 등의 기준) 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--	---